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무처 명칭	주식회사 홍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100%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 시술비	65세이상·장애인 건강보험 선정특례자	실손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기타 계												
0	홍길동 (근로자 본인)			○			국세청 기타												
1	부모님 000000-00000000			○		○	국세청 기타												
4	홍아들 000000-00000000			○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1-3월	4-12월	1-3월	4-12월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①2)	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 (「소득세법」 §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①3다)	6	수급자(코드 1~6제외) (「소득세법」 §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①3마)	8

-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돌봄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인 중 발달장애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외국인: 내국민=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필수 작성 사항

- 노랑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반드시 작성하세요.

인적공제 항목

-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에 체크하고, 인적공제 항목을 작성해주세요.
- 변동이 없는 경우 : '전년도와 동일'에 체크하고, 인적공제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칸을 늘려서 작성해주세요.

기타 안내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9쪽 중 1쪽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